

전기용품안전인증 Q & A

우리나라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은 1974년 1월 4일자로 공포되어 30년이 넘게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개정이 여러번 있었고 2000년 7월 1일자로 형식승인이 안전인증으로 바뀌는 등 대폭 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 궁금한 점을 질의한 것을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과에서 응답한 내용중 꼭 숙지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질의와 응답을 여기에 게재하오니 전기용품제조·수입업체의 많은 참조가 있기를 바랍니다.
(편집자주)

Q 전자기 적합성 안전기준인 K00013 규격에서 텔레비전수신기로 제품 등록을 하고자 하는데 이 제품은 아날로그와 디지털 방송을 수신하는 LCD TV입니다.

K00013 부록 A에 보니 디지털방송 수신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 "A.5.4" 절에는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 수신기"에 대한 정의로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측정은 디지털 모드에서 수행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수신에 대해 분리된 튜너의 경우 국부 발진 주파수에서의 방사 측정과 고조파는 부가적으로 아날로그 모드에서 수행된다."

위의 규격대로라면 아날로그방송에 대한 시험은 하지 않고 디지털 모드에 대한 시험만 하라는 것인데(방해한계 값인 4항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음.) 이것이 맞는지요. 즉 LCD TV수신기(디지털방송 수신가능) K00013 텔레비전수신기로 분류하여 아날로그 신호를 수신하여 4항 방해한계 값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방송 수신기로 분류하여 디지털신호를 수신하여 4항 방해한계 값을 적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날로그 신호 수신기와 디지털 신호 수신기를 모두 적용하여 4항 방해한계 값을 적용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귀하께서 문의하신 텔레비전수신기의 전자파장해 측정방법 시험기준인 K00013의 부록 "A.5.4 디지털과 아날로그 신호 수신기"에서 "모든 측정은 디지털 모드에서 수행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수신에 대해 분리된 튜너의 경우 국부 발진 주파수에서의 방사 측정과 고조파는 부가적으로 아날로그 모드에서 수행된다."의 의미는 "튜너일체형인 경우는 디지털모드에서 측정하고", "튜너 분리형인 경우는 디지털모드와 아날로그 모드의 국부발진주파수에서 측정"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Q 전자식안정기 외함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즉, 안정기 케이스가 없는 상태(PCB)에서 조명기구에 취부되어 속이 환하게 보임)

A 문의하신 전자식안정기 외함케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인증가능 여부 문의에 대하여는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규격에서는 외함이 없는 경우는 KS규격 표시 인증이 불가합니다. 또한 KS C 7603 형광등 기구 규격에서도 등기구내에 설치하는 안정기의 외함이 없는 경우도 KS규격 표시 인증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전자식안정기가 전기용품기술기준인 EK 인증된 조명기구에 취부된 전자식안정기인 경우에는 외함이 없는 경우도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EK인증과 관련된 세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